

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2007. 11. 30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II. 현황 및 문제점	3
III.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전략	6
IV. 부문별 경쟁력 제고 대책	7
1. 국제표준 시험능력 제고	7
2. 시험장비와 전문인력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8
3.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11
V. 추진일정	12
VI. 기대효과	13
[붙임 1~3]	15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유무역협정 체결확대에 따라 시험·분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기술무역장벽(WTO/TBT), 한·미/EU FTA 협상시 시험·분석 인증시장 개방요구 증가
- 시험·분석 세계시장 규모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연평균 7%성장, 50조원('05년) → 80조원 ('12년) 예상
 - 국내시장 연평균 9.5%성장, 3.4조원('06년) → 5.9조원('12년) 예상
 - * 미국은 연간 11% 성장, 90억 달러 이의 창출('05년 WTO/TBT 보고서)
- 국제표준 시험·분석 능력 43%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수출기업 시험비용/소요시간 절감의 핵심 도구인 국제공인 성적서(46개국 통용) 발행자격 유지를 위해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이 필수적임
 - * 국제공인시험기관상호인정(ILAC-MRA)체제 유지
 - * ILAC-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기술무역장벽 극복 및 핵심기술유출 방지 위해 시험·분석 장비·인력 인프라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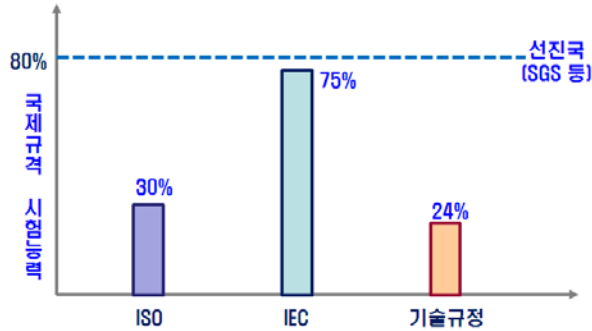
- 환경관련 기술무역장벽 타개, 나노/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기술 유출 극복 수단으로 시험·분석기관 장비 현대화와 전문인력 육성 시급
 - '07년 전기전자제품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조치(RoHS),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ACH)에 이어 '08년 이후에는 환경배려설계(EuP) 실시에 대응
 - * 선진 각국은 기술무역장벽 대응과 자국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초정밀 장비구축에 정부지원 확대 추세임

그간의 추진경과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07년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하면서 추가 검토사항 요구('07.2.16)
 - 「시험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수립시
 - 시험·분석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재원, 기초 측정, 수요측 입장과 관계되는 기획예산처, 과기부, 중기청이 참여하여 검토
 - * 과기부 등 5개부처 회의개최 후 정책연구 실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7.6~9)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반영('07.7.30)
 - “시험·분석 지식서비스 산업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함
 - 국제수준의 시험기관 육성을 위하여 「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수립·추진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산자부)」에서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추진('07.8.30)
 - 시험·분석을 제조업과 연계성이 높은 유망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 및 집중 육성
 - 수출지원 및 제조업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추진

II.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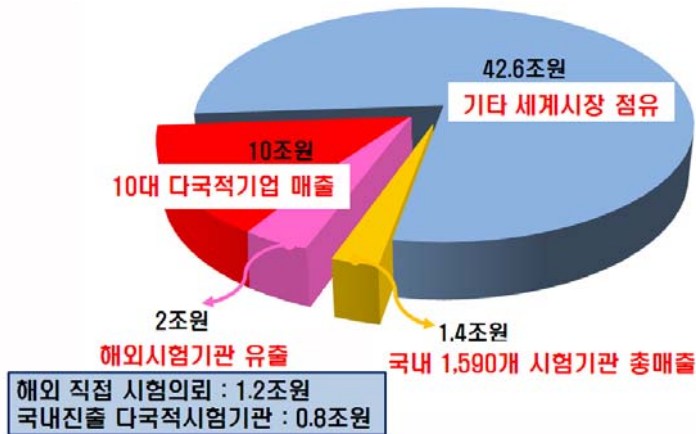
- 국내 시험·분석 능력이 선진국의 1/2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열세
 - 국제규격(ISO, IEC) 시험능력은 다국적 시험기관의 80%에 비해, 국내기관은 평균 43% 수준에 불과
 - * 전기·전자(IEC) 산업의 시험능력은 75% 수준이나, 다른 분야는 30%이하



- 국내 시험·분석 기관의 규모 영세로 글로벌 브랜드 확보 어려움
 - SGS, UL 등 10대 다국적 시험기관이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나, 1,59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시험·분석 기관은 2.6% 점유에 그침
 - * 해외 시험기관에 직접의뢰 1.2조원, 국내 진출 다국적시험기관 의뢰 0.8조원 등 총 2조원이 해외유출(총 국내시장 3.4조원의 60% 상당)

[해외 다국적기관과의 매출비교]

(세계시장 규모 : 54조원, '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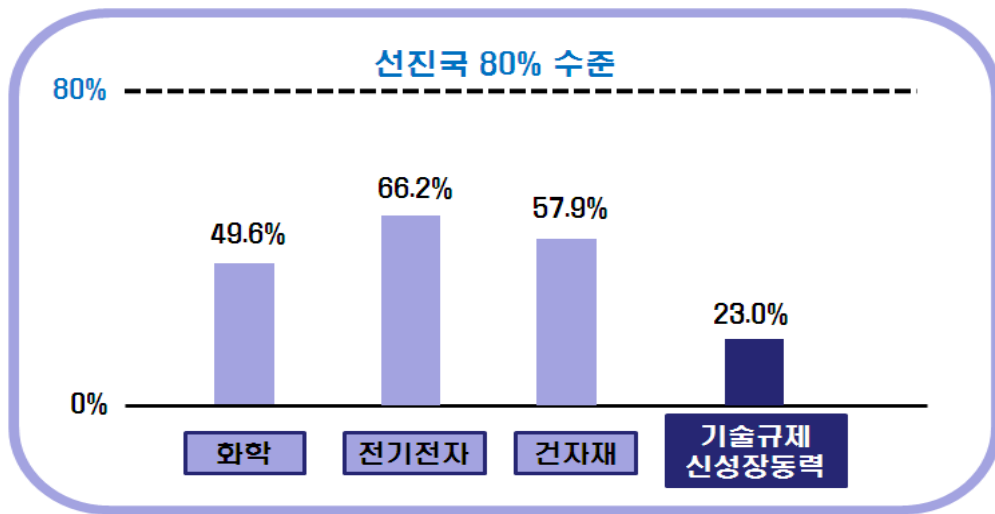


- * 세계최대 시험기관 SGS와 국내 종합시험기관 산업기술시험원(KTL)과 비교
 - SGS는 매출 43배, 종업원수 94배로 절대 우위

기관명	매출액	종업원수(명)	해외지사수 (국/지사)	비고
SGS	2조5천억원	46,000	140/1,000	
KTL	580억원	489	2/3	연락사무소 운영

□ 산업별 시험·분석 능력 격차 심화

- 화학, 전기전자 등 전통산업 부분의 시험능력은 일정수준 이상이나, 새로운 기술규제, 차세대 신성장동력 부분의 격차 심각
- 국제표준 시험능력은 화학 50%, 전기전자 분야는 66.2% 이나, 의료기기, 환경, 바이오 융합기술 등 기술규제 및 신성장동력 분야는 선진국 수준의 23%에 불과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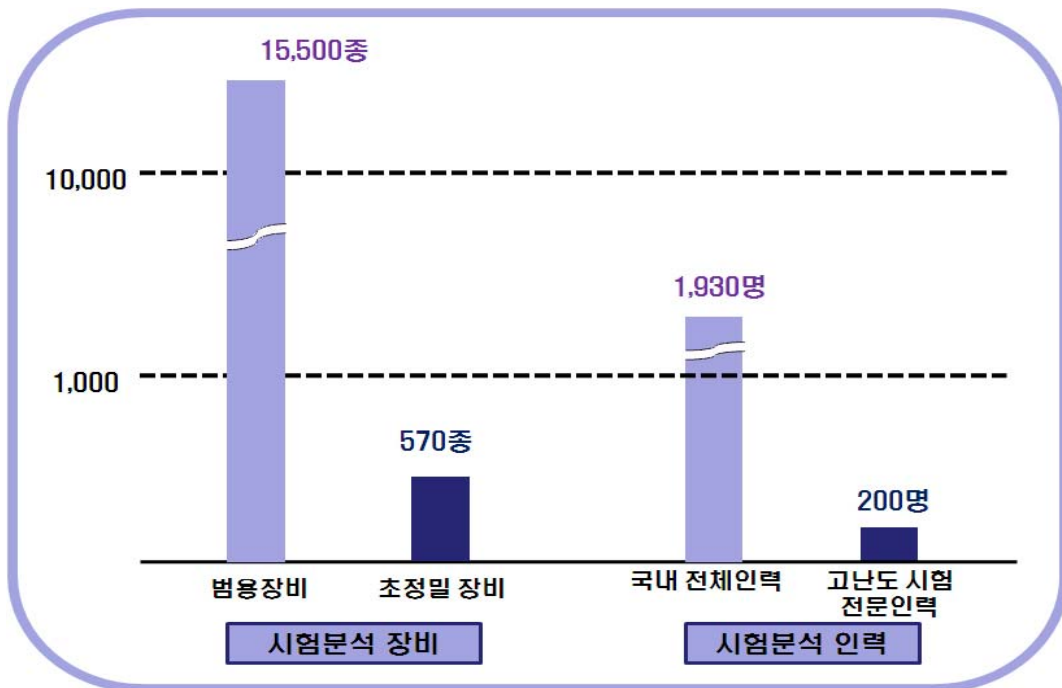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구장비 관련 R&D사업에서 순수 연구장비 지원금액 대비 시험·분석장비 지원은 5%('07년)에 불과
- 시험·분석장비 가동률(수출제품 성적서 발행 등)은 95%로 활용률이 높음

[연구장비와 시험장비 지원규모 비교]

항목	연도		
	'03년	'05년	'07년
R&D 사업비 중 장비구입 비 (A)	4,966억원	7,359억원	7,267억원
순수 연구장비 (B)	4,655억원	6,991억원	6,904억원
시험·분석장비 (C)	311억원	368억원	363억원
B/A × 100(%)	93.7%	95.0%	95.0%
C/A × 100(%)	6.3%	5.0%	5.0%

□ 초정밀 고난도 시험·분석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 초정밀 시험장비 부족이 시험·분석 서비스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
 - 국내 시험·분석 기관은 전통적인 범용 장비를 15,500여대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규제, 차세대 성장동력 초정밀 시험장비 보유는 570여대(3.7%)에 불과
- 환경, 나노 등 첨단분야 고난도 시험의 국내 전문인력은 200여명에 불과
 - * 전체 시험·분석 인력 1,930여명의 10.3%
 - 다국적 시험기관 SGS는 시험분석 인력 46,000명, 지사 1,000개를 보유, 연간 2.5조원 매출



◆ 환경규제대응,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초정밀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내시장의 60%를 다국적 시험기관이 점유
 ⇒ 2조원의 시험비용 해외 지출과 국내기술 유출이 우려

Ⅲ.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전략

정책 목표

- ◆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개방 대응
- ◆ 기술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지원
- ◆ 시험·분석능력 제고로 기술유출 방지

3대 중점과제

- ▶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분석 능력 향상
- ▶ 시험·분석장비와 전문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 시험·분석 산업을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 국제표준(ISO/IEC) 시험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43% → 80%)
- ◆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로 대외 인지도 제고

-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투자 확대
- ◆ 기존장비 활용 프로그램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확산
- ◆ 초정밀 고난도 전문인력 양성

- ◆ 해외 투자기업과 동반 진출
- ◆ 고난도 시험능력 확보로 기술유출 방지

IV. 부분별 경쟁력 제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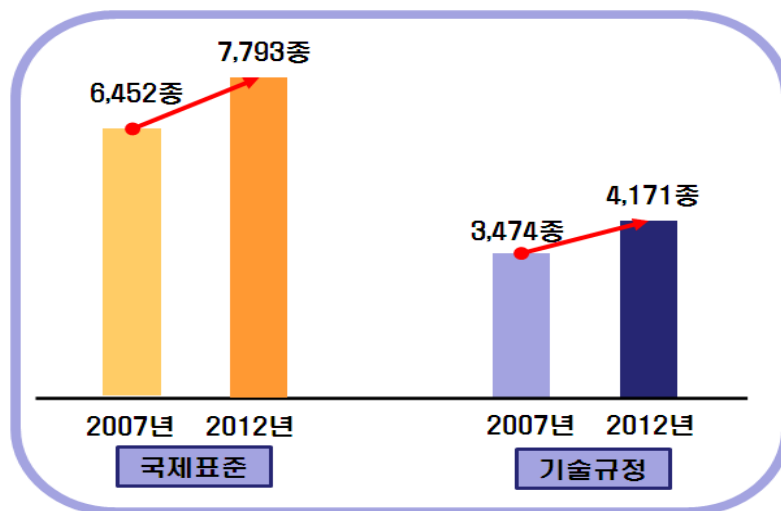
1. 국제표준 시험능력 향상 및 국제공인기관의 대외인지도 제고

□ 국제표준(ISO/IEC)에 대한 시험·분석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분야별 전문시험기관을 향후 5년 이내, 선진 핵심규격의 80%까지 시험능력 확보

- 정밀제어 응용기기 등 국제규격 1,340종, 환경규제 등 기술규정 697종에 대한 시험능력을 확보

* SGS 등 다국적 시험기관은 국제표준 시험능력을 80% 확보하고 있음



□ 국가간 상호인정(MRA) 확대로 국제공인기관의 대외인지도 제고

○ 국가별로 차별화된 MRA 전략 수립과 KOLAS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인정 품목, 규격, 범위 등 상호인정체계 전략적 대응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 KOLAS의 국제활동 강화를 통해 검사, 자격인증 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확대

2.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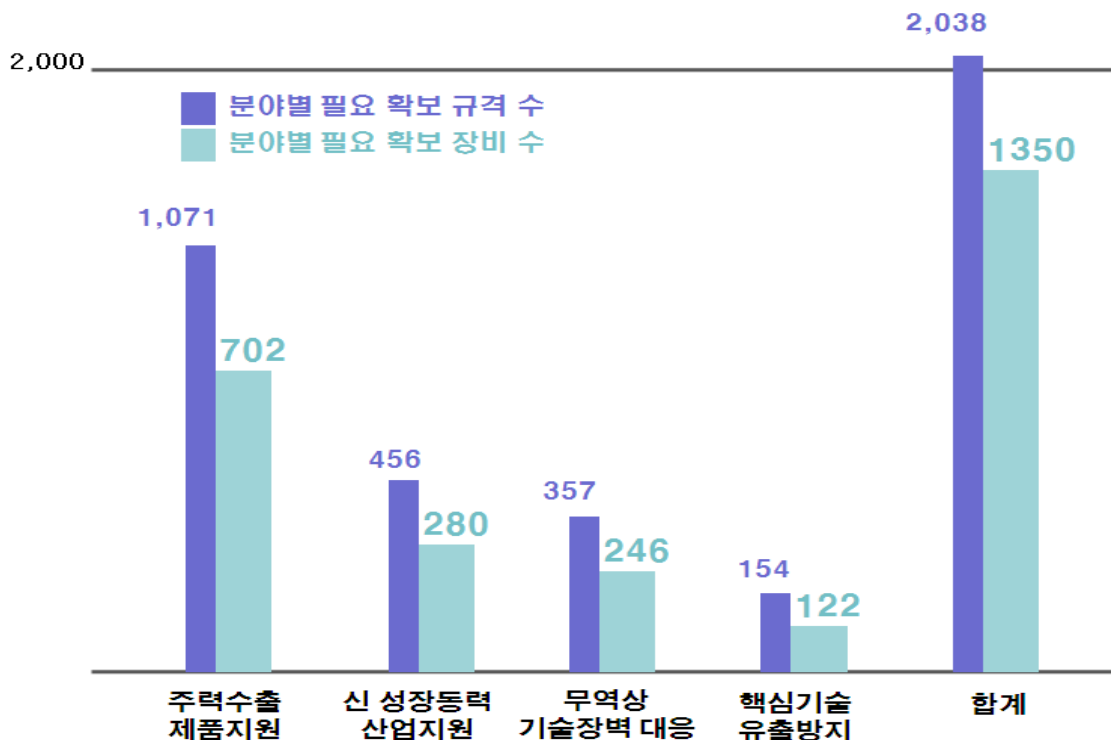
①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시험·분석장비 현대화 투자 확충

□ 전문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반도체, LCD 등 수출주력제품, 나노 융합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 환경규제물질 등 기술장벽, 정보통신 등 핵심기술유출방지를 위한 1,350종 장비현대화 추진

* 수출제품은 모든 분야, 기술장벽은 환경, 신성장동력은 전기전자 분야에 높은 수요 요구

[분야별 확보 필요 규격 및 장비 수(정책연구결과)]



□ 시험·분석장비의 국제수준화를 위한 첨단 장비 구입자금 지원

- 정책연구결과 환경규제, 핵심기술 유출방지 등 국가차원에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 확대

- 5년간 정부는 2,450억원(70%), 시험기관은 1,050억원(30%), 총 3,500억원 필요

* 필요예산은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장비의 종류 및 적정 소요 검토

② 산자부의 시험·연구장비 활용혁신운동인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존장비 활용률을 극대화

□ 1단계 : 산자부 69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천적 이행을 추진(07.11)

- 69개기관 보유장비(17,000종)중 48%(8,200종)를 활용도 제고 대상장비로 분류
 - * 약 1,500종(기표원 1,200종 포함)은 타기관 이관, 약 6,700종은 공동활용 대상
- 이관대상장비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관으로 이관실행(07.11)
- 공동활용 장비에 대해서는 실천적 「공동활용 시스템」을 개발·운영(08년)

□ 2단계 : 장비 공동활용 및 이관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의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

-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사업 및 인프라구축 사업의 평가 연계 강화
 - 신규사업 신청시 소요장비 활용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타기관 이관 등 활용도 제고 수준에 따라 보상체계 확립
- KOLAS 인정 및 KS 인증 시 의무 보유장비를 축소하고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화
- 시험·연구장비의 운용 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 工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장비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1, 2단계 성과를 평가하여 범부처사업으로 확대 추진 방안 검토

- 산자부가 추진중인 공동활용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후 국가차원의 연계 활용 검토
 - * 필요시 「국가장비활용사업단」(가칭)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장비의 상시교환·임대·거래를 실천하는 범부처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③ 향후 5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 5천명, 표준물질 300종 개발하여
초정밀 고난도 시험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

□ 자유무역협상(FTA), 기술규제(TBT) 확대 대응에 필요한 시험분석 능력 확보

- 화학, 부품, 전기, 기계, 환경 등 5개분야 5,000여명 시험측정요원 양성
 - 산·학·연 전문가 확대를 통한 산업체 지원체계 마련하여 기존의 인력양성 사업(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이공계 대학생의 현장적용 가능한 첨단시험장비 시험측정 인력 배출

-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인턴사원 및 정규직 채용 시험기관에 대해 R&D과제 평가시 가점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 시험장비보유기관과 연계하여 연간 500여명(50여개 대학) 교육 실시

□ 국제시험소인정협약체(ILAC)에 적극 참여와 시험·분석 숙련도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4개 기관을 숙련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 200개 프로그램 개발하여, 향후 5년간 1,000개 기관 참여

□ 시험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확대

- RoHS규제물질, 나노산업 분야 등 국민 건강 및 환경 관련 표준 물질을 개발하여 적기에 보급(5년간 100억원, 표준물질 300종)

< 표준물질 개발 계획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계
1차표준물질 (종)	20	15	20	20	15	90
상용표준물질 (종)	45	50	55	30	30	210
계	65	65	75	50	45	300

3.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Global Korea」 사업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 해외진출지원단”에 의한 시험분석기관을 해외 투자기업과 동반진출로 해외시장 개척
 - KOTRA 등을 통한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시험분석기관과 전문인력의 글로벌화
 - *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시험연구원 등이 해외 시험소 설치에 Global Korea 사업활용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종합시험분석센터 설치·운영
 - 전기전자, 화학 등 분야별로 시험·분석, 인증, 컨설팅을 종합지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분야의 고난도 시험능력을 확보하여 기술유출 방지
 -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등 7개 분야에서 선박용 통합제어기술 등 40개 핵심기술의 국내 시험능력 강화
 - 초정밀 고난도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시험·분석을 위한 150여개의 시험장비·인력 우선 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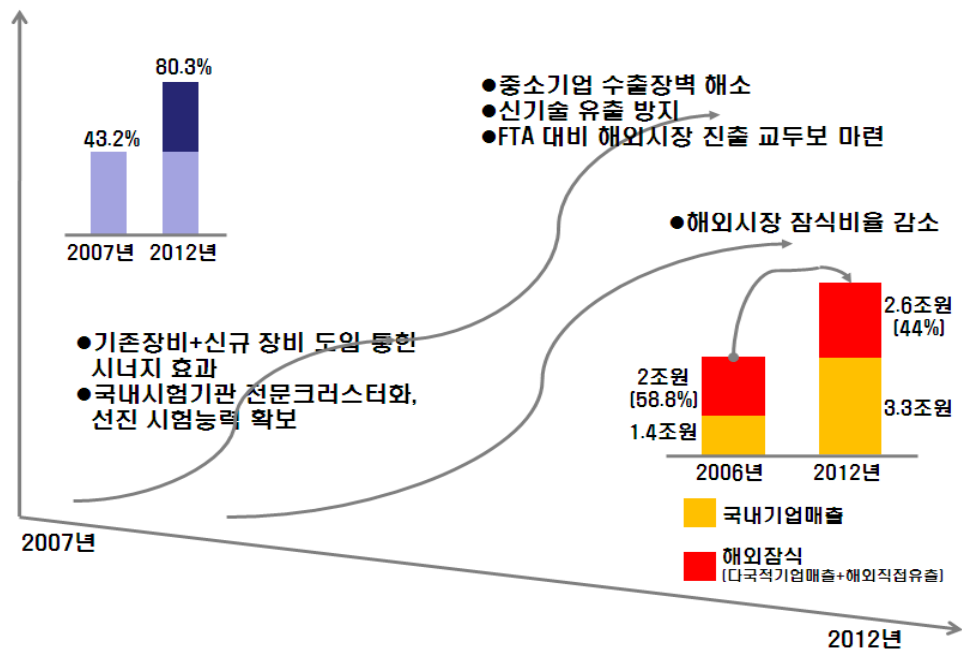
V.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
1. 국제표준 시험능력 제고	시험가능 국제표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국제상호인정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2. 시험장비 · 전문인력 확충	시험 · 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기존장비 활용도 제고					
	시험분석 전문인력양성					
	숙련도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표준물질 개발보급 확대					
3.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 지원확대					
	시험능력 확보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VI. 기대 효과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의 시험능력 확보를 통해 '12년 해외지출 규모 3.7조원을 2.6조원으로 감소시킬 경우, 직접비용 절감효과는 1.1조원으로 추정



□ 기존 보유시험장비 활용 프로그램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한 기대 효과

- 장비의 이관, 교환, 공동 활용 등의 촉진을 통해 신규·중복 투자 방지 및 국책사업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연간 2,400억원)
 - 수입 시험·연구장비의 대체효과, 해외(외국계) 시험·분석기관 이용 최소화
 - * 현재 장비의 58%가 외국산, 외국계 시험분석기관 활용 60%
- 참여기관간 장비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기관·지역간 시험·연구장비의 수요 불균형을 해소

의결제안사항(Proposed Decision)

회의일시 : 2007. 11. 30(금)

안건제목 : 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안건분류 : 의결안건

상정부처 : 산자부

의결사항

1. 2007. 11. 30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주요 의결내용은,
 - (1) 국제표준 시험능력 및 인정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
 - ① 향후 5년간 선진 핵심 국제표준의 80%까지 시험능력을 확보한다.
 - ② 국가간 상호인정(MRA) 확대를 국제공인기관의 대외인지도를 제고한다.
 - (2)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
 - ① 시험·분석장비 구입 정부지원금을 확대한다.
 - ② 범부처 시험·분석 보유장비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시험분석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 (3) 시험분석을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 ① 해외 시험·분석 시장 개척에 KOTRA 등을 통한 행정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전문시험기관으로 도약한다.
 - ② 국가혁신기술지정분야의 고난도 시험능력을 확보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 (4) 이상의 추진과제들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일정을 안건 12페이지에 적시된 대로 결정한다.

붙임 1

시험분석 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험능력 확보 세부내용

- 국내시험분석 서비스기관 1,590개로 단순시험기관 1,229개(매출액60%), 전문시험기관 361개 (매출액 40%)

〈매출액 규모별 현황〉

매출액(억원)	10이하	10~50	50~100	100이상
기관수(개)	1,113(70%)	397(25%)	48(3%)	32(2%)

*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2007

- 국내시험분석 전문기관 분야별시험 가능한 규격 현황

	화학	전기전자	기계	전자재	기타
대상규격	6,302	2,053	3,506	2,612	462
시험가능규격	3,128(49.6%)	1,359(66.2%)	348(9.9%)	1,511(57.9%)	106(23%)

* 시험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8개 기관 분석자료(KISTI)

- 국내시험분석기관 시험능력 정밀도 60.5%수준

- 국제공인 KOLAS기관은 556개로 자체시험을 하는 기업이 67%, 상업적기관은 25%이나, 대외경쟁력을 갖춘 시험분석서비스 전문기관은 KTL 등 20여개 기관 정도임

<KOLAS인정 시험·검사·교정기관 현황>

(‘07. 10 기준)

구 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계
시험기관	31	87	160	278
검사기관	-	28	58	86
교정기관	13	24	155	192
계	44	139	373	556

<국내 시험기관 해외진출 현황>

기관명	해외지사		상주인원 (현지인)	'06매출액 (억원)	비고
	국명	지사수			
KTL	미국, 중국	3	3 (8)	-	연락사무소 운영
의류시험연구원	중국	4	3(190)	25	
FITI시험연구원	중국	2	3(68)	2.6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국	2	5(6)	11.5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국	2	4(7)	-	'07년진출
화학시험연구원	중국	1	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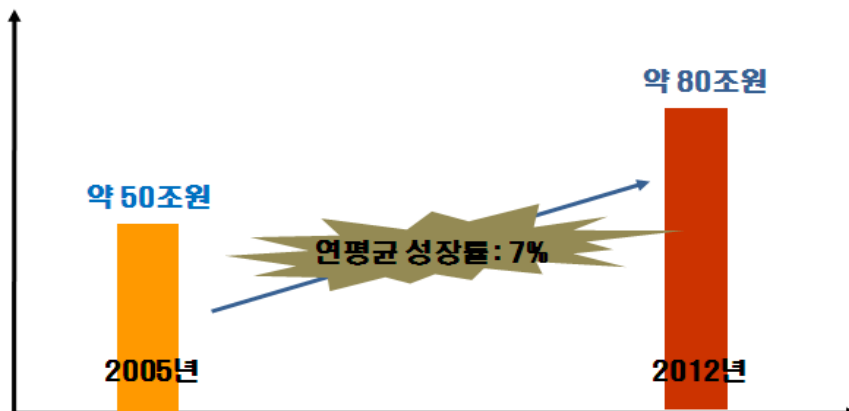
- 국내 시험분석시장 3조4천원('06) 중 다국적 시험기관에 연간2조원(약60%) 유출
 - 국내 기업은 수출제품 시험·분석을 위해 생산원가의 3.1%를 차지

<국내 시험·분석시장 현황>

항목	시험·분석기관 수	매출	비고
국내기관	1,590개	1조 4천억원	
국내진출 다국적기관	SGS 등 24개	8천억원	
해외다국적기관	도레이 리서치센터등	1조2천억원	직접의뢰

- 선진국의 시험·분석기관은 전문화·대형화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발전
 ○ 세계 시험·분석 시장 규모는 '05년 50조원, '12년 80조원으로 전망
 - SGS, BV 등은 연간 2조원 이상 매출규모이며, 종업원 수는 4만명

* 우리나라 최대시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연간 580억원 규모이며, 종업원수 490명 규모



□ 산업분야별로 시험능력을 확보하여 할 규격·장비현황

	화학		전기전자		기계		전자재		기타		소계	
	규격	장비	규격	장비	규격	장비	규격	장비	규격	장비	규격	장비
핵심기술 유출방지	40	35	5	3	107	82	2	2	-	-	154	122
주력수출 제품지원	289	275	223	153	221	98	271	156	67	20	1,071	702
무역상 기술장벽 대응	259	196	5	3	22	16	71	31	-	-	357	246
신 성장동력 산업지원	110	109	175	120	52	21	105	27	14	3	456	280
합계	698	615	408	279	402	217	449	216	81	23	2,038	1,350

○ 미래의 수출환경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능력 확보 방향

	현재	미래시장의 니즈
화학	고분자,식품,섬유	환경,정밀화학,BT,전자소재
전기전자	가전 및 전기제품	광,통신,정밀제어기기
기계	일반기계,수송기계,정밀기계	전자기계,의료기기,조선
전자재	금속,토건,광산,일반세라믹	신소재, 전자재의 유해성
기타	생활환경	음향소음,플라즈마,패키징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Technology Infrastructure Partnership)

□ 개요

- 시험·연구 장비보유 기관들이 **Network**를 구축하여 보유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타기관 보유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R&D·시험분석 등 질적수준 제고, 예산절감 및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실천적 협력체제

□ 사업 개념

- **기존 장비활용 촉진방안** 장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공급자)과 장비 이용 희망자(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DB구축**에 초점
 - * INFRANET(산자부), TRIN(중기청), KEOL(과기부) 등의 정보공유사이트 운영
-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활용도가 높은 타 기관에 **이관** 혹은 **교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혁신 사업
 - * 활용도가 낮지만 보유가 필요한 장비는 기관간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 * 보유장비에 대한 상시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환·매매·임대를 촉진

기존 장비활용 촉진방안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공급자 ↔ 수요자 연결	공급자 ↔ 공급자 교류
KEOL(과기부), INFRANET(산자부) TRIN(중기청) 구축	다수의 시험기관(공급자)들이 교류해 장비를 이관 혹은 상호공유

□ 추진 방안

- **참여기관** 1단계 사업으로 산자부 69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인프라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 2단계로 범국가적으로 확대
- **이관장비** 69개 유관기관이 보유한 장비(17,000종) 중 1,500여종을 이관대상장비로, 6,700여종은 산학연 공동활용 장비로 선정
 - * 정부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기술표준원(1,200여종), 중기청(100여종)의 장비를 유관기관 이관대상 장비로 제공
- **추진체계** 합리적인 이관기관 선정을 위해 산자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위, 조정위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 정부기관(중기청, 기표원) 소관 장비는 무상대부 형식으로 대여하고, 기타 유관기관은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 **사후관리** 장비이관 후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장비운영 교육, 평가지표와 관리지침 보급 및 참여기관 인센티브 지원 검토 중

붙임 3

시험분석 전문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시험분석분야	종업원 (인)	시험분석 종업원 (인)	보유 장비수 (대)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계, 금속, 광산, 토건, 식료품, 섬유, 요업, 화학, 의료	326	158	400
2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전자제품 과 부품의 안전, 전자파 및 성능평가 시험, 의료기기 시험, 등	160	126	2451
3	한국전자파연구원	전기/전자	67	43	843
4	한국기기유해시험연구원	화학, 기계, 계량기, 의료기기, 안전검사	95	81	891
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섬유, 화학, 산업자재	188	83	207
6	FITI시험연구원	섬유, 산업재료, 환경.	200	150	353
7	(재)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건축재료, 내후성평가, 건축환경	199	169	327
8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역학 및 화학	194	153	1092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기계,화학, 환경	475	327	4000
10	한국광기술원	광학및광도시험	91	6	260
11	중소조선연구원	선박시운전분야, 선형시험.검증	25	6	11
12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기계, 전기, 금속, 요업	6	2	23
13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방화, 방폭, 음향, 진동, 환경, EMC	31	24	61
14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기계,전기,금속	1,262	32	162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 섬유, 기계, 금속, 전기·전자분야	318	23	489
16	한국전기연구원	전력기기 및 전기재료	489	73	1,010
17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분야	220	200	701
18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인증센터	전기안전시험	13	11	300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가스터빈엔진, 연소기, 압축기, 고속추진기관, 공력 성능시험)	594	20	6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내화, 하중, 토질, 음향, 건축환경 등	487	40	106
21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234	54	808
2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제품	88	7	161
23	한국섬유기계연구소	기계, 음향, 섬유, 금속	29	4	97
24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섬유, 잡화 시험검사 및 검사 / 연구개발	170	86	350
25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견뢰도, 물성	19	3	12
26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무/플라스틱/피혁/신발	91	6	120
27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섬유제품	110	8	188
2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역학시험, 화학분야, 전기시험, 열및온도측정	235	32	112
계			6,416	1,927	15,541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2007. 11. 30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 I. 추진배경 1

- II. 안건 공개의 예외에 대한 세부기준 2
 - 1. 관련 법령상의 규정 2
 - 2. 조정회의 안건의 공개 기본방향 2
 - 3. 비공개 수준의 구분 기준 3

- III.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4
 - 1. 현황 및 문제점 4
 - 2. 회의록 공개의 기본방향 4
 -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5

- IV. 향후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6

※ 첨부 1 : “회의록” 양식(작성 예시)
첨부 2 :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규정

I. 추진배경

-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99.6월 대통령령으로 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그동안 경제정책에 관한 핵심적 장관회의체로서 경제현안에 대한 부처간 인식공유 및 중요 경제정책의 협의·결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 * '06년(31회 개최, 102건 심의), '07.11월(23회 개최, 66건 안건심의)
-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회의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의 공개가 필요하나 국가의 이익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법의 규정 취지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함
- 아울러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조정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도 추진

II. 공개 예외에 대한 세부 기준

1. 「정보공개법」 상 규정

- 공공기관의 보유 정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

<동법 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중 략 -
- 정부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이하 생략 -

2. 조정회의 안건 공개의 기본방향

- 조정회의 상정안건은 정보공개법 9조1항 각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 동법 9조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토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14조)
- ⇒ 비공개범위를 ①제목·내용 비공개 ②내용 비공개(제목공개) ③내용 부분비공개(제목공개)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비공개 안건을 관리(아래 기준 참조)
- 비공개 안건이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
- 비공개 안건을 다루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사실이나 안건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경우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 회의 주관부처인 재경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3. 비공개 수준의 구분 기준

비공개 수준	세부 기준
① 제목·내용 비공개 (완전 비공개)	1.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포함된 안건
	2. 국가안전보장, 통일, 국방, 외교관계, 통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안건
	3. 정부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외교섭, 시장안정, 체계적인 정책추진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4.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안건
② 내용비공개 & 제목공개	5. 완전비공개의 세부기준 3호에 해당하고, 가까운 시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안건
③ 내용 부분비공개 & 제목공개	6. 안건 내용이 공개, 비공개부분이 분리가 가능하며, 국민들에게 분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안건

Ⅲ.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라 매회의시마다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조정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을 생산·보관하고 있음

* 회의 전과정을 녹취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의진행 내용 일체를 기록

- 정보공개법 제10조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할 필요

2. 회의록 공개의 기본방향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회의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적극 공개
 - 다만 아래사항과 같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하는 등 회의록 공개를 제한적으로 운영
- 회의록 내용 중 공개 예외사항
 - (비공개 안전) 안전명·논의내용·회의결과 등 비공개 안전 관련 기록은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
 - 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안전에 준하여 회의록을 공개
 - (발언요지의 공개 제한) 공개안전이라 하더라도 발언요지가 전부 공개될 경우 국익의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
 - 다만 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논의사항, 참석자들간 이견없이 합의·조정된 사항 등은 빠짐없이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 대법원 판례도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관하여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판시(2002두 12946)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1. 회의록 작성 및 생산

- ①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의결안건인 경우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 ② 매회의시마다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을 생산하되, 속기록 생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회의록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재정경제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관리함

* 별표 1 :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 양식(참고 1)

2. 회의록 공개

- ①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되, 회의록 내용 중 다음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비공개로 분류된 안건 관련한 기록 일체. 단, 부분 비공개 안건의 경우에는 관련 보도자료의 범위내에서 공개

나. 공개안건 관련한 발언요지 중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② 비공개 안건이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안건에 준하여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건 주무부처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IV. 향후 계획 및 부처 협조사항

- ‘비공개 수준의 구분 기준’ 및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은 다음 경제정책조정회의시(12.10일 잠정) 부터 시행

- 안전 상정부처는 안전의 비공개 수준을 ‘구분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해당사유를 안전 표지에 기재하여 상정

- * (예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은 「비공개 수준의 구분 기준」 5호에 해당 → 안전표지 상단 ‘기준 5호’ 기재

경제정책조정회의 안전 07-14-3(의결안건)	비 공개 (기준 5호)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의결제안사항(Proposed Decision)

회의일시 : 2007. 11. 30(금)

안건제목 :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안건분류 : 의결안건

상정부처 : 재정경제부

의결사항

1. 2007. 11. 30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주요 의결내용은,

(1)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안건의 '비공개 수준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2)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운영지침을 확정한다.

07년 제00차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예시)

◇ 회 의 개 요 ◇

- 일시·장소 : 07. ○. ○(금) 9:00,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 참석자(총 ○○명)
 - 경제부총리(주재),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여성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대참)
 - * 배석자 :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경제협력국장, 정책조정총괄과장, 기획예산처 정책총괄팀장, 산자부 산업정책과장
- 회의 안건
 - ① 해외 M&A 활성화 방안(재경부)
 - ②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계획(재경부)

1. 07-○○-1 (의결안건) 해외 M&A 활성화 방안

□ 보고자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발언요지

- (부총리) 관련 법령들이 금년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
- (산자부 장관)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긴급요

□ 결정사항 : 수정의결

- * 참석자 23명 중 23명 전원 찬성
- (수정사항) 안건내용 중 12페이지의 세부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안건에서 삭제

2. 07-○○-2 (보고안건)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 (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제3조 (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구성원 등<개정 2005.2.25>)

①삭제 <2005.2.25>

②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2005.2.25, 2005.6.23>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제6조 삭제 <2005.2.25>

제7조 (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 (실무조정회의)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본조신설 2001.2.14]

제10조의3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5.2.25]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6405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6호,20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7354호,2001.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부칙 <제18713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